제2857호
2021.08.17.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 집 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58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
제158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5
제158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8

[규 칙]

제74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4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

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 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 · 단체 ·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5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비
3.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4.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5.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2.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정산 등)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

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6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및 인도	○ 차량진입 방지 시설(경계석 등)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관련 시설 ○ 육교 ○ 맨홀 ○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 시설 ○ 가로변 휴지통 등 ○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2. 교 통	○ 볼라드 등 차량진입 방지 시설 ○ 교통 관련 표지판 ○ 교통 신호기 등 ○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관련 시설 ○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물
3. 공 원	○ 가로수 등 각종 수목 및 보호대 ○ 벤치 ○ 음용수대 ○ 공중화장실 ○ 체육시설물 등
4. 그 밖에 중구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이나, 심의회에서 심의 인정한 공공용 시설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내용							접수자	처리내용							
	일자(시간)	장소	신고내용	신고인					구분	일시	시설상태			조치내용	처리자
				성명	주소	전화	비고				시설종류	고장유형	상태		
									통보						
									확인일시						
									보수일시						
									통보						
									확인일시						
									보수						
									통보						
									확인일시						
									보수						
									통보						
									확인일시						
									보수						
									통보						
									확인일시						
									보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

연번	신고일자	신고인				조치결과		포상금지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조치일자	내용	지급일자	사유(건수)	금액	계좌번호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등) ⑧「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2항 중 “프로그램 총 운영시간은 월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를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4조(프로그램 운영 등) ⑧「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의시간은 자치회관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총 운영시간은 월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